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동일인 등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친족 범위 조정 등〉
■ 윤한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63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1. 동일인의 의의	3
2. 동일인, 동일인관련자 정의 규정 신설 등	5
3. 동일인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의 개선	1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한홍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24.
3. 회 부 일 : 2024.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인이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현행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정의하고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그 기업집단과 동일인에게 공시의무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각종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규제의 중요사항인 “동일인”의 정의는 부재하고 “기업집단”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 또한, 강제 권한이 없는 자연인인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경영환경과 가족관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하고 낡은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정의와 “기업집단”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여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대·경제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해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 및 제10호의3
신설, 제31조제4항 등).

Ⅲ. 검토의견

1. 동일인의 의의

□ 일반적으로 동일인은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하여 소속 기업들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자연인인 경우에는 ‘총수’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집단 주력회사를 의미함.

□ 동일인은 1986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개정을 통해 등장한 이래 현행법상 규제의 준거로 활용되어 왔음.

- 즉, 동일인을 통해 기업집단이 정의되고(법 제2조제11호1)),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개념으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등의 준거로 기능함.

□ 동일인의 법적 정의가 부재한 가운데, 실무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기업집단을 특정하고, 해당 기업집단 최상위 기업의 최대출자자 또는 대표이사를 확인한 후, 누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있음.²⁾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 개념은 이른바 재벌체제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환경에서 기업집단의 총수를 지칭하기 위한 개념으로 활용되어 옴. 그러나 경제환경의 변화, 기업집단 총수의 건강 악화나 사망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동일인이 직계비속별로 분화되었고 동시에 규제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동일인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³⁾

□ 더불어 동일인의 법적 정의 부재로 동일인의 지정 방법, 대상, 절차에 관해 이견이 발생하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에 기업집단의 범위(영 제4조)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예규로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추구함.

2)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의 쟁점과 해석’. 법학논고 제84집. 2024, p.525

3) 신영수, 위의 글, p.526

2. 동일인, 동일인관련자 정의 규정 신설 등

- 개정안은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동일인관련자의 범주에서 5촌·6촌인 혈족 등은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u>“동일인”이란 둘 이상의 회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u> <u>가.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u> <u>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해당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u>

현행	개정안
<신설>	1) <u>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명한 자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u> 2) <u>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u> 3) <u>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자</u> 4) <u>그 밖에 해당 회사의 인사, 재무, 경영활동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10의3. “동일인관련자”란 다음

현행	개정안
	<u>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u> <u>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u> <u>1) 배우자</u> <u>2) 4촌 이내의 혈족</u> <u>3) 3촌 이내의 인척</u> <u>4)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u> <u>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 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u> <u>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u>

현행	개정안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u>단체</u> <u>라. 동일인이 제10호의2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u> <u>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u>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0호의3라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과 같은 호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12. ~ 20. (생략)	다. 12. ~ 20. (현행과 같음)

□ 현행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령은 동일인의 정의를 두지 않고 기업집단의 정의를 통해 동일인 개념을 유추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즉, 법 제2조제11호의 기업집단 정의를 통해 동일인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두 개 이상의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해석될 수 있음.

□ 개정안은 동일인 개념의 정의 부재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원용하여 동일인을 법률에 정의하고(안 제2조제10호의2), 동일인 관련자를 정의하면서 현행 시행령보다 그 범위를 축소(안 제2조제10호의3)하는 한편, 법률상 기업집단의 범위에 현행 시행령 제4조제2항⁴⁾의 규정을 수정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단서).

4)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② 제1항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과 같은 호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가. 동일인의 정의

□ 개정안 제2조제10호의2의 동일인 정의에 사용되는 각 목의 규정은 대체적으로 현행 시행령의 기업집단의 범위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개정안 제2조제10호의2와 현행 시행령의 비교>

개정안	시행령 제4조
가.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출자자	1. 동일인이 <u>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회사</u>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u>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u>
1)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명한 자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자	가. 동일인이 <u>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명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u>

2)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나. 동일인이 <u>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u>
3)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자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u>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u>
4)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인사, 재무, 경영활동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그 밖에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u>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u>

□ 동일인은 기업집단 규제의 핵심인데도 그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현행법상 규제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특히 동일인 기준에 따라 기업집단 범위 및 관련 규제 수범자의 해석 등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수범자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상 대기기업집단의 지정과 같은 행위는 법적 근거가 명확

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동일인 지정은 그 근거가 부재하여 불복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⁵⁾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2023년에 동일인 제도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규제로서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지정자료 제출이나 공시 의무 등이 부담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그 정의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담은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 다만 이미 해석을 통해 추출된 개념 자체에 큰 미비점이 없고 사례의 축적으로 동일인 지정 기준에 대한 가늠도 가능한 상태라는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 또한, 개정안 제2조제10호의2에서는 동일인을 “둘 이상의 회사에서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즉 “기업집단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1호에서는 기업집단을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인과 기업집단 개념이 서로 반복·순환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해서는 현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7)에서 동일인을 정의

5) 홍대식,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2024, 한국경제인연합회, p.6

6) 신영수, 위의 글, p.536

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하면서 주식보유한도, 의결권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는데 입법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안처럼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 기업집단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에 두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되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나. 동일인관련자의 정의

- 개정안 제2조제10호의3의 동일인관련자 정의에 사용되는 각 목의 규정도 현행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하였는바 양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개정안 제2조제10호의3과 현행 시행령의 비교>

개정안	시행령 제4조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3촌 이내의 인척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제10호의2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

□ 현행 시행령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보다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 동일인과 친족의 지분을 합산하는 현행 규제는 동일인이 친족을 지배하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최근 일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계가 희석되고 있다는 점과 가족 간 유대의 정도가 갈수록 약해지는 추세라는 점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시대적 추세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드러남.

- 즉,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친족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가목)으로 규정하던 것을 개정을 통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였음.

□ 개정안은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실제적 범위로 축소함으로써 자료제출 의무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⁸⁾

- 현행법 제31조제4항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해 회사와 특수관계인에게 자료

8) 2022년 시행령 개정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총수가 있는 60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8,938명에서 4,51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였음(2021년 5월 기준).

9)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제출요구의 실무적 부담 주체인 동일인은 넓은 범위의 친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 반면, 자료 미제출이나 거짓 제출의 경우 형벌(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수범자의 과도한 의무를 경감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다만, 동일인관련자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당시에도 「민법」¹⁰⁾은 여전히 친족의 범위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점, 재벌체제의 강화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반대하는 의견¹¹⁾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이 비교적 최근에 있었고, 현행 시행령에서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하게 한 것은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력을 확장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개정안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10)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11) 경실련 등 시민단체

다. 기업집단의 범위 조정

- 개정안 제2조제11호 단서는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도 사외이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현행 시행령 제4조제2항¹²⁾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도 사외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2조제11호는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나아가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경영하는 경우도 제외하고 있음.
- 종래의 시행령(2022년 개정 전)은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회사라도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면 원칙적으로 기업집단에 포함하되, 임원선임 전부터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것, 사외이사 임원이 동일인 계열사에 3% 미만의 지분을 보유할 것, 사외이사 임원과 동일인 간 겸임·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과 같은 임원독립경영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음(opt-out 방식).

그러나 개정 시행령(2022)은 원칙적으로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회사는

12)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② 제1항제1호라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과 같은 호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되 임원독립경영요건(영 제5조제1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기업집단에 포함하도록 규정(opt-in 방식)함으로써 기업의 임원독립경영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장려하였음.

□ 개정안은 임원독립경영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을 기업집단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시의무 등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사외이사와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임.

- 대한상공회의소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¹³⁾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¹⁴⁾에 따라 비영리법인 이사 5명 중 4명 이상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제한하는 등 이미 현행법상 독립성을 충족하는 상황이므로 공정거래법에서 비영리법인을 동일인관련자에 포함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시행령에서 사외이사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13) 제5조(임원 등)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4)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③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

3. 동일인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의 개선

- 개정안은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에서 자연인인 동일인은 제외하고 자료 미제출에 따른 처벌 수준도 낮추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 <u>동일인(자연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u> ----- ----- ----- -----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5조(벌칙)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 7. (생략) 제1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u><삭제></u> 3. ~ 7. (현행과 같음) 제126조(벌칙)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1조제4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같은 조 제1항)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125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확한 자료제출을 위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제도 개요 및 지정자료 작성 요령’이라는 메뉴얼을 배포하였는데, 해당 메뉴얼에서는 실무적으로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이 동일인임을 명시함.

□ 그동안 친족 범위 등과 관련하여 동일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료 제출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¹⁵⁾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즉, 동일인이 친족과 임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야 하고¹⁶⁾, 이로 인해 동일인은 사실상 교류가 없는 친족인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형벌의 위험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함.

□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할 필요성과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현행 유지 측면에서 보면, 현행법상 고발의 대상은 중대한 법 위반이나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형벌 규정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현행법상 제125조의 벌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법

15) 대한상공회의소, 위의 글, 홍대식, 위의 글 등

16) 홍대식 위의 글, p.10

제129조제2항17)에 따라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에 따른 고발의 대상이 되는 유형과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서도 고발 시 위반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검토하면 현 제도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¹⁸⁾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의 인식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 자료제출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데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서 절차적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로 충분하다는 것임.

- 개정안은 법 위반의 억지력, 수범자의 의무 부담의 정도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과 같이 입법하더라도 양벌규정¹⁹⁾에 따라 법인의 의무위반이 있는

17)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18) 홍대식, 위의 글 p.11, 신영수, 위의 글 p.544

19) 제128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4조부터 제126조까

경우 자연인인 대표가 형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인에 대한 형벌이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움.²⁰⁾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의 실질을 고려하여 동일인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성실한 자료제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인의 친족 정보는 자연인인 동일인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 법 위반의 억지력 등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9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판례도 위반행위를 한 대표자가 처벌 대상이지 법인 자체의 범죄능력은 부인하고 있음(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도 7280)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법인의 업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이하 생략)
